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41
----------	------

2017년 3월 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2월 8일, 이현찬 의원 (찬성자 11명)
- 나. 회부일자 : 2017년 2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27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7년 3월 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현찬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들어 전기로 움직이는 차세대 개인교통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를 활용한 출·퇴근 및 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한국의 경우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청계천에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바, 시장의 행정지도 사항에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를 포함시켜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보호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 1) 청계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시장의 행정지도 사항에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를 포함하고, 장애인 또는 노약자 이용 장치와 청계천 시설관리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안 제11조제7호).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안은 청계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시장의 행정지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기존 행정지도 사항 중 하나인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의 이용행위 부분에 최근 차세대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동 휠,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¹⁾ 이용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1)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란 최첨단 충전, 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 이동 수단을 의미함. 전기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2인승 개념의 소형 개인 이동 수단에 집중돼 있기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부르기도 하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이 대표 사례로써 이들 스마트 모빌리티는 휴대하기 편리하고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표 2] 개정안 주요골자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행정지도)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이용행위 8. (생략)	제11조(행정지도) ----- ----- ----- 1. ~ 6. (현행과 같음) 7.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 (다만, 장애인·유아·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공사·보수 등 청계천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현행과 같음)

- 이에 대해 소관부서(물순환안전국-하천관리과)는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안과 같이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행위를 행정지도 사항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동감하면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전동 휠,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²⁾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있어야만 운행할 수 있고 헬멧 등의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함.
- 201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전국 경찰서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중상자 2명을 포함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공식집계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할 경우 발생건수는 더 늘어난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임³⁾.
- 그리고 청계천 행정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자전거/인라인의 경우 2015년도 행정지도 총 52,112건 중 16,446건(31.6%)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행정지도 총 54,334건 중 19,545건(36.0%)으로 전년대비 4.4%p 증가한 추세로 개인교통수단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겠음.

[표 3] 청계천 행정지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음주/흡연	노점상/잡상인	자전거/인라인	노숙자	기 타
2015년도	52,112	20,150	424	16,446	770	14,322
2016년도	54,334	19,984	354	19,545	1,180	13,271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3) 김일창, 「'최신유행' 스마트모빌리티...그러나 법 사각지대 속 위험성 ↑」, 뉴스1코리아, 2016년 10월 15일.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나 스마트 모빌리티 등을 포함한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를 시장의 행정지도 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 (다만, 장애인·유아·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공사·보수 등 청계천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행정지도)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u>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이용행위</u></p> <p>8. (생략)</p>	<p>제11조(행정지도)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 (다만, 장애인·유아·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공사·보수 등 청계천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u></p> <p>8. (현행과 같음)</p>